

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. 감정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

의회운영위원회

전문위원 김태식

이 조례안은 1994년 8월 8일 배종환 의원외 13명 의원이 발의하여
94년 8월 10일 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음.

1. 안건명: 부산직할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. 감정등에관한조례안

2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및 등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남구 의회에서의 증언. 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코자함.

3. 주요골자

- 증인등의 출석의무, 출석요구, 선서를 규정(제 2조, 제 3조, 제 4조)
- 증인등의 보호 규정(제 6조)
- 필요시 의결로 검증을 행함(제 7조)
- 불출석등에 대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(제 9조)
- 의회등 모욕금지(제 10조)
- 위증에 대한 고발(제 11조)

4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 20조, 제 36조(별지참조)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 4, 5(별지참조)

5. 검토의견

-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증언, 진술 거부시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,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, 증인의 선서등 행정 사무 감사, 조사권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
-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 제36조(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권)의 전문 개정과 동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들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, 보완하므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, 감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 조례 제정안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
- 본 조례안은 국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됨.